

정책요구에 대한 답변 내용

1. 이동권

요구사항	답변내용	담당부서
1-1. 시군 시내버스의 100% 저상화를 위한 계획 조속 수립	○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('12~'16)에 의거 연차별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	대중교통과 서비스개선담당 (850-3741)
1-2. 광역버스와 마을버스의 교통약자 수용계획 수립·이행	○ 현재 버스의 저상화 및 리프트 장착 기능은 일반 시내버스에 한해 운영되고 있으며, 향후 광역버스 및 마을버스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은 주관 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음	대중교통과 서비스개선담당 (850-3741)
1-3.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이동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	○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는 시·군별로 일정대수 이상 운영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검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·군이 특별교통수단 수단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道차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 ○ 경기도에서도 교통약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동권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음	교통정책과 교통안전담당 (850-3982)
1-4. 특별교통수단의 시군 지원비 규모 확충 및 2014년까지 법정대수 확보·운영	○ 특별교통수단 운영 주체는 시장·군수임 ○ 경기도는 시·군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100대씩 도입하여 2016년까지 법정대수를 도입할 계획이며, 개별 시·군의 의지에 따라 추진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○ 또한 시·군 지원비 규모 확충을 위해 국비확보 등을 노력하겠음	교통정책과 교통안전담당 (850-3982)

2. 활동보조

요구사항	답변내용	담당부서
2-1. 활동보조서비스 경기도 추가지원 대상자 확대	○ 향후 2012년도 추가지원 예산을 운영한 후 확대여부 판단하겠음	장애인복지과 (복지담당) 8008-4317
2-2.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	○ 보건복지부 「장애인활동지원 지침」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으며, 향후 중앙(보건복지부)의 “지침 개정” 등 변경시 확대폭을 검토 하겠음	“
2-3. 2,3급 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	○ 현재 보건복지부 「장애인활동지원 지침」에 의하여 1급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며, 향후 중앙(보건복지부)의 “지침개정” 등 변경시 반영토록 하겠음 ○ 2~3급 장애인에 대하여는 현재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 (2,478백만원),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운영(40백만원),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(849백만원) 등을 지원하고 있음	“
2-4. 활동보조 심사시 장애유형에 맞는 심사기준 마련	○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「장애인활동지원 지침」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급여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향후 중앙(보건복지부)의 “지침개정” 등 변경시 검토 하겠음	“

3. 탈시설 - 자립생활

요구사항	답변내용	담당부서
3-1. 시설거주인 인권실태 조사 및 자립생활욕구 조사 실시 3-2. 탈시설자립생활 전환시스템 구축 3-3. 체험홈 설치 확대 및 운영비 지원 3-4. 장애인 자립주택 시범운영 3-5. 탈시설 장애인 초기정착금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는 '12년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민관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○자립생활욕구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시설 실태조사 시 병행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음 ○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의 경우 향후 운영실태 등 성과 분석 후 확대여부 및 운영비 지원여부 검토하겠음 ○ 탈시설 자립생활 전환시스템은 타시도 운영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수립하겠음 	장애인복지과 주택정책과

4.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수립

요구사항	답변내용	담당부서
4-1.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체계 및 권리옹호 체계 구축 1) 경기지역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 위한 조례 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달장애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제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. ○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관련단체 의견 수렴 중임 	장애인복지과 복지담당 8008-4317
2)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 수립(4년주기)	○ 전국차원의 발달장애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령 제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검토예정임	“
3)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예방 및 권리옹호 위한 직속기구 설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」('12.4.6 제정) ○ 2013년까지 '장애인인권센터'를 설치하여 발달장애인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적극 관리할 계획임. 	장애인복지과 정책담당 8008-4362
4-2. 발달장애인 전환 지원체계 및 주간활동 지원 예산 수립 1)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센터 설치·운영,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, 전환 서비스 연계, 평가 및 추적 등	○ 전국차원의 발달장애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령 제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검토예정임	장애인복지과 복지담당 8008-4317
2)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예산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달장애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수가 부족하여 가족의 경제적·심리적·육체적 어려움의 가중에 따라 주간보호시설 확대설치 필요 -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운영 : 112개소 ‘11년 67개소, ‘12년 86개소, ‘13년 99개소, ‘14년 112개소 -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	장애인복지과 시설담당 8008-4322

요구사항	답변내용	담당부서
4-3.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1) 발달장애인 지원고용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자폐성, 지적,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교육,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, 인식개선교육 등의 사업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등 6개 사업 19,155백만원 ○ 향후 지원단체 및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직종개발, 사업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음. ○ 이와 관련 경기복지재단에서 장애 유형별 직종발굴을 위한 연구수행중임 	장애인복지과 정책담당 8008-4362
2) 지자체 공공기관 발달장애인 고용 시범사업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0년부터 지적·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배치 시범사업을 추진중임. -'10년 14개 도서관→'11년 144개 도서관→'12년151개도서관 1명이상 배치 추진 ○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시 발달장애인을 배려한 일자리 배치 추진 및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유형을 발굴해 나가겠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'11년 공공일자리 발달장애인 배치 : 584명 (복지일자리 477명, 행정도우미 107명) / '12년 계획 254명 	"
3) 새로운 고용모델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장애 유형별 직종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중으로 발달장애인 대상 직종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○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고용촉진 주무기관인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할 계획임. 	"
4) 잡코치 지원제도 예산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상남도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음. 	"
4-4. 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1)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돌봄·휴식·역량강화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개소가 운영중이며, 향후 운영실태 등 성과 분석 후 확대여부 검토하겠음 	장애인복지과 복지담당 8008-4317
2) 시군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시군에서 필요시 설치여부 판단할 사항임. 	"
3)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예산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후 운영실태 등 성과 분석 후 예산지원 등 확대여부 검토하겠음 	"

5. 장애인 평생교육

요구사항	답변내용	담당부서
5-1. 성인 장애인 교육권 확보 예산의 시군 매칭 철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관련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거 도와 시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「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」 제8조(보조금의 대상사업·기준 보조율 등)에 근거하여 시군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.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생교육과 행복학습담당 850-2681</p>
5-2. 평생교육 추진 주체 경기도는 민간경상 보조금의 형태로 창구 단일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생교육 추진 주체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거 도 및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를 비롯한 시군에서도 평생교육 지원 사업 부서가 있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. ○ 따라서 동 사업은 시군의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, 앞으로도 경기도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.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</p>

6. 장애여성 권리보장

요구사항	답변내용	담당부서
6-1. 장애여성 인권실태 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성가족부의 장애인 분야가 포함된 가정폭력·성폭력 실태조사시 여성가족부와 협조체계 유지(경기도에 대한 분석자료 활용 등)로 여성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성가족과 여성기획담당 8008-2511</p>
6-2. 장애여성 쉼터 및 긴급지원체계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여성 쉼터 1개소 건립중('12년 7월 준공예정) ○ 신고자 --> 상담소 --> 쉼터 긴급지원 연계체계 시행 중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성가족과 여성기획담당 8008-2511</p>